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세요



전월세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 [bokjiro\(bokjiro.go.kr\)](http://bokjiro(bokjiro.go.kr))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소득·재산신고서
-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⑤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장애인·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가구수	임차가구				자가가구			
	지원상한액(원/월)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원 상한액				
1인	266,000	225,000	179,000	158,000	지원 상한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2인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415,000	351,000	274,000	239,000	지원 주기	3년	5년	7년
5인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504,000	430,000	331,000	291,000				

지급일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